

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7. 9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 내 창업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학과 및 행정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창업마인드 제고 및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준비된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강좌 개발 및 운영
2.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
3. 예비 창업자 육성 및 지원
4. 창업캠프, 창업경진대회, 창업현장실습 등 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
5. 학생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전문컨설팅 지원
6. 기타 센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구성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·창업지원처 산하에 두며 센터장, 팀장, 운영위원회, 행정 직원(조교)으로 구성한다.

-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1.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 2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② 팀장은 선임이상의 직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기능)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·변경에 관한 사항
4.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) ① 회의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8조 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국고지원비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